

구분 업종	사 용 요 금		
	사용구분(m ³)	m ³ 당 단가(원)	
		현 행	조 정
대중목욕탕용	0~500이하	110	130
	500초과~2000이하	130	160
	2000초과	150	180
업 무 용	0~50이하	150	180
	50초과~300이하	230	270
	300초과	250	300
영 업 용	0~30이하	90	120
	30초과~50이하	240	280
	50초과~100이하	400	440
	100초과~200이하	510	560
	200초과~1000이하	580	640
	1000초과	650	720

3. 검토의견(건설전문위원 안석수)

-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량 점유율이 낮은 대중 목욕탕용과 업무용은 사용구분에 따른 인상률에 차이가 별로 없으나, 30m³이하 사용 가정용과 영업용에 있어서는 m³당 단가를 현행 90원에서 33.3%를 인상한 120원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.
- 전체 하수량 대비 가정용은 67%, 영업용 22%로 하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본수량의 요금의 너무 낮아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30m³이하 가정용, 영 업용에 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안정된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. 단, 사용구분에 있어 기본수량을 낮게 하고 점차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자원절약 차원에서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는 m³당요금이 164원으로 원가 208원 대비 79%로 연간 486억원의 결손이 발생되고 있으 며, 하수도특별 회계 차입금 상환 3,659억원, 노후·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약 5조원, 수질기준을 강화한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의거 2008.1.1 부터 적용되는 하수고도처리에 약 5,600억원이 소요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가.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(1월 기준)

구분 업종	사 용 요 금		
	사용구분(㎡)	㎡ 당 단가(원)	
		현 행	조 정
가 정 용	0~30이하	90	120
	30초과~50이하	240	280
	50초과	400	440
대중목욕탕용	0~500이하	110	130
	500초과~2000이하	130	160
	2000초과	150	180
업 무 용	0~50이하	150	180
	50초과~300이하	230	270
	300초과	250	300
영 업 용	0~30이하	90	120
	30초과~50이하	240	280
	50초과~100이하	400	440
	100초과~200이하	510	560
	200초과~1000이하	580	640
	1000초과	650	720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2003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56
------	-----

2003년 3월 23일
 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안일자 : 2003년 2월 28일
- 다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3년 3월 18일(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(제안설명자 : 건설기획국장 김영걸)

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(2003.1.10)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(2003.1.15)에 따라